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13일 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1995년 3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가.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령의 규정과 실제운영상의 차이를 시조례를 개정한 후 자치구 조례를 개정함
- 견인료 수입이 시에서 구수입으로 전환
- 노상주차장 수입이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조치
- 특별회계 세입증대로 구단위 주차장 건설 및 확충기능 강화

나. 주요골자

- 세입추가
 -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 견인수수료 수입
- 세출추가
 - 견인 대행비용
-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 적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 현행 견인료를 시수입에서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하는 내용
- 도로주차장의 주차료 수입을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하므로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의 일부가 확보된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6
----------	-----

제출년월일 : '95. 11. 2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현행 도로교통법령의 규정과 실제운영상의 차이를 시조례(견인관련조례,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를 개정한 후 조례준칙에 의거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95년부터 견인기능이 구청으로 전환됨으로써 현행 견인료 수입의 시수입에서 구청수입으로 전환
-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수입의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조치.
-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로 구단위 주차장 건설 및 확충기능 강화.

2. 주요골자

- 세입추가
 -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 견인수수료 수입
- 세출추가
 - 견인대행 비용
- 기금적립
 -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3. 개정근거

- 주차장법 제8조, 제21조의 2.
- 도로교통법 31조, 31조의 2.
-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 제5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제4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제3조(세입)		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1.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3.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4.
3. 서울특별시 보조금		4.		5.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6.
5.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7.
6.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7.		8.
7.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8.		9.
8.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9.		10.
9. 기타 잡수입		10.		11.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세출)		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1.		2.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2.		3.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3.		4.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신설)		4.		5.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5.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6.		